

뒷걸음치는 세금제도

윤종훈

회계사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3년만에 두배로 증가! 간접세 비율이 5년만에 50%를 상회!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된 반갑지 않은 내용이다. 조세부담에서 월급쟁이는 봉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던 말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을 언론에서 확인할 때는 뭔가 씁쓸하다. 혹자는 그 동안 노동자의 명목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통계로 확인해 보자.

월급쟁이는 봉

1994년도에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율(소득중 소득세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로서 자영업가구의 2.67% 보다 월등히 높다. 즉, 노동자는 100만원 소득에서 33,500원을 소득세로 납부한 반면, 자영업자는 100만원 소득에서 26,700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는 뜻이다. 또한, 87년의 개인사업자의 과세자비율(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1원이라도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33.1%이었지만 96년에는 34.8%로서 10년 동안 1.7%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자 비율은 87년 48.4%이었던 것이 96년 60%로서 무려 11.6%가 증가하였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87년에 100명중 33명이 세금을 내다가 96년에는 35명이 세금을 내게 된 반면, 근로소득자는 87년에 48 명이 세금을 내다가 96년에는 60명이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정도의 통계자료면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사실은 증명

되었을 것이다.

	소득세 부담율 (1994년기준)	과세자비율	
		1987년	1996년
노동자	3.35%	48.4%	60%
자영업자	2.67%	33.1%	34.8%

여기서 간접세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는 의미를 보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간접세는 대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주세 따위의 소비세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보자. 부가가치세는 1,000원짜리 과자를 살 때 1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재벌그룹총수가 과자를 사나 거지가 과자를 사나 똑같이 1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세금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간접세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세부담과 간접세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두 가지 사실은 과거 조세정책이 거꾸로 갔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

그러면,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이러한 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새 정부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충격은 금융실명제의 유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5.5%의 추가 세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고이자율 시대에 가뜩이나 현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소득이 벌어지는 판에 이러한 조치는 부익부 빈익빈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 ‘고액재산가의 변칙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

이는 세금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이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포기한 마당에 무슨 수로 음성소득과 변칙거래를 포착하겠다는 것인가? 세무공무원들이 현장 세무조사를 자주하고 세법의 관련조항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에 자주 써먹었던 방법이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만 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세법만 갖고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세법과 관련된 주변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다. 금융실명제가 철저히 시행되는 나라일수록 탈세 규모가 적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준다.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주는 금융실명제를 포기하면서 음성소득과 변칙거래를 철저히 잡아내겠다는 것은 해괴한 일이다.

특별소비세 인상과 전문직 부가세 면제

들쭉, 지난해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같은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IMF관리체제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LNG, LPG, 등유 같은 서민용 연료를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의 폐지는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보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전문직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원론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에게 100%로 전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전문직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업자일 경우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기 때문에 전가되지 않는다. 반면,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 이론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음식점은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규모가 커져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자. 일반사업자가 되면 이론적으로 음식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과세특례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4,000원짜리 설렁탕을 4,400원으로 올린다면 손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결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상당부분을 겨안을 수 밖에 없다. 즉, 4,000원을 그대로 받되 4,000원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자기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직도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수료를 10% 올려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 상

호 경정이 심한 요즘의 세태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세수증대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유도 실득력이 없다. 비록, 세수 증대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형평성에 비추어 과세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에게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조세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조세행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나라살림이 어려워니 세금을 조금씩만 더 내달라고 요구할 때 흔쾌히 세금을 더 낼 마음자세를 갖고 있다. 전세계가 놀란 금모으기 운동의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서 세금은 더 적게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분위기에서는 기꺼이 세금을 더 내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서 탈세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

금융실명제 유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유보, 양도소득세의 더욱적인 축소 따위는 주로 부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이다. 아무래도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데 있어서 서민들이 좀 더 허리를 졸라 췌야 할 것 같다.

두면 되지, 왜 서민들의 가난한 주머니만 털려고 해?" 당연한 반응이다.

또한, 전문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증가효과보다 세원노출로 인한 소득세의 증가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세수증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신의 세원을 솔직하게 노출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보다 과세사업자가 유리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무용으로 300만원 짜리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3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컴퓨터를 파는 사업자에게 추가로 주게 된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는 나중에 3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게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환급받지 못해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들의 세원을 포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과연 정치 지도자들이 조세행정을 바로잡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한다. 바로 눈앞에 닥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추상적 구호로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고액재산가의 탈세방지'를 외치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조세행정의 어두운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합토지세 인상

셋째, 현재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경기를 일으키기 위하여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는 낮추는 반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정도인 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이다. 결국,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늘릴 경우 지방세의 수입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가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문제 역시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진 원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인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필자는 반대한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려면 실소유자 중심의 수요증대,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철폐, 산업경기 전반에 대한 기대감 향상 따위가 더욱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일부 투기꾼에게 민감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혹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와 부동산투기의 활성화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만 인하해도 최고세율이 40%이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같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여 번 소득에 대한 세율과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같다니! 어느 나라에 땀흘려 일한 소득과 불로소득을 같이 취급하는 세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아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취득자금 출처조사도 면제하는 방침을 검토해 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마 그 방침이 시행된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증여의 수단,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애용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다. 서민들의 조그마한 내집마련의 꿈마저 부동산투기의 열풍이 빼앗아 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투기는 꿈도 못꾸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만약,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또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과거의 임대차관계에 비추어 그 세부담은 임차자에게 전가되기가 쉽다. 건물소유자가 늘어난 세부

담을 임차료의 상승으로 보전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옛 속담이 있다. 부동산경기를 살려서 건설업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게 하려는 의도가 이해는 가지만 잘못하다간 서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고통과 보유세 부담의 전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불과 몇 달전, 금융실명제가 경제파탄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 부쳐 결국 이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제가 좋아졌는가? 장롱 속에 있던 수십조의 돈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현금유동성이 좋아졌는가? 결국, 일부 검은 돈에게 더러운 거래에서의 불편함을 제거해주었을 뿐이다. 불과 몇 달전 일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모르겠다. 부동산경기는 활황화시키지 못하면서 일부 고액재산가의 세부담만 경감시켜 결국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말이다.

조세부담 불평등은 경제악화의 한 원인

불경기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단순히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불경기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서민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건전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바로 내수시장의 감소로 이어진다. 내수시장의 감소는 많은 기업에 타격을 주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현재 소비를 절약하자는 것은 과소비 또는 외화를 낭비하는 소비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건전한 소비마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비싼 로얄티를 지불하는 피자나 스파게티는 자제하되 빈대떡이나 짜장면은 먹어야 한다. 양주는 자제하되 소주나 막걸리는 어느 정도 소비해야 한다. 돈은 피이고 소비는 피를 들게 하는 혈압이다. 피가 돌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듯이 돈이 돌지 않고 경제가 살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불경기의 부익부 빈익빈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불평등은 동맥경화를 심화시키는 콜레스테롤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금융실명제 유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유보, 양도소득세의 대폭적인 축소 따위는 주로 부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이다. 그로 인한 세수부족은 소비세를 증가시키거나 근로소득세를 증가 또는 유지함으로써 매꿀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래도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데 있어서 서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 같다. ❖